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45
----------	-----

제출연월일: 2020. 8. 14.

제 출 자: 경상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보건의료휴가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규정됨으로써 조례와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여 복무 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
- 나.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하는 내용 정비

- 1) 연가 분할허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제2항)
- 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단서 삭제(안 제15조)
- 3) 여성보건의료휴가 조항 삭제(안 제18조제2항)
- 4)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조항 삭제(안 제18조제10항)

나. 특별휴가 확대 : 포상휴가 신설 → 5일 이내(안 제18조제11항)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 규제 요인 없음[총무과-9793(2020. 7. 13.)]

나. 부패영향평가: [감사관-6367(2020. 7. 14.)]

의견내용	반영 여부	조치결과 및 사유
◦ 포상 휴가의 수여 기준 및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거나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개정	반영	◦ 포상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하도록 개정 반영

다.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대상이 아님[학생생활과-10306(2020. 7. 13.)]

라. 입법예고 : 2020. 6. 23. ~ 2020. 7. 13.

의견내용	반영 여부	조치결과 및 사유
◦ 방학 중 학습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요구	미반영	◦ 미사용 학습휴가 일수에 대한 방학 중 사용은 조문 개정없이 별도 지침 마련하여 시행 가능 [2020년 1 차 노사협의회(2020. 7. 23.)]

의견내용	반영 여부	조치결과 및 사유
◦ 기관학습휴가 1일 신설 요구	미반영	◦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와 달리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며, 학습휴가 외에도 재직기간별 21일의 연가 부여 및 특별휴가 일수의 확대로 충분한 휴가 활용의 기회가 있으므로 교육행정기관의 학습휴가 시행은 어려움[2020년 1차 노사협의회(2020. 7. 23.)]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④ ~ ⑨ (생략) ⑩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제18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⑨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u><신 설></u>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⑪ <u>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u>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5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u><삭제></u>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수반요인 :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의 내용상 조례의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 총무과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상현(054-805-3625)